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3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  | 1 |
| III . 주요내용 ..... | 1 |
| IV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민수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 III.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회계보고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40조(회계보고) ① ~ ③ (생략)                                                      | 제40조(회계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u>사본</u>                                             | 3. -----<br>---- <u>사본(인터넷 예금통장 사본 포함)</u> |
| 4. ~ 7. (생략)                                                               | 4. ~ 7. (현행과 같음)                           |
| ⑤ · ⑥ (생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                             |
|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br>-----<br>-----.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 | 5. -----<br>-----<br>-----<br>-----        |

|                                                                                                                                                                                                        |                                                                                                                                                        |
|--------------------------------------------------------------------------------------------------------------------------------------------------------------------------------------------------------|--------------------------------------------------------------------------------------------------------------------------------------------------------|
| <p>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u>사본</u>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p> <p>6.·7. (생략)</p> | <p>-----<br/>-----<br/>-----<br/>-----<br/>-----<u>사본</u><br/>(인터넷 예금통장 사본 포함)-----<br/>-----<br/>-----<br/>-----<br/>-----.</p> <p>6.·7. (현행과 같음)</p> |
|--------------------------------------------------------------------------------------------------------------------------------------------------------------------------------------------------------|--------------------------------------------------------------------------------------------------------------------------------------------------------|

현행법 제40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일정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sup>1)</sup>하고 있음.

1) 「공직선거법」 제40조(회계보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3.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4.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그 수입기관을 포함한다)·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사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잔여재산의 인계·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보전비용의 인계·인수서는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이 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이란 ①예금주, 계좌 번호, 도장 또는 서명으로 실명확인이 표시된 통장 사본 표지와 ② 일자별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표시된 통장거래 내역 사본을 의미 하는 것임.<sup>2)</sup>

그러나, 첨부 서류 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이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예금통장 사본과 지점장 등의 확인·날인이 되어 있는 입·출금 거래내역서(은행직인이 찍힌 온라인 입·출금거래내역서 포함) 이외의 것은 회계보고 시 첨부 서류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sup>3)</sup>

이로 인해 회계보고자들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을 모두 수작업으로 복사하거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점장 등의 확인·날인이 되어 있는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금통장 사본 일부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2025.3.7.)

3) 다만,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지점장 등의 확인·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예금통장 사본을 갈음하여 회계보고 시 인정하고 있음.

**《2024 후원을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P.131》**

**4.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1) 수입·지출용으로 사용한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점장 등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회계 보고자들이 입출금 거래내역을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수작업으로 예금통장 사본을 복사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과 복사본 일부의 누락 문제 등을 해소하여 회계보고의 신속·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용어의 불명확성 문제임. 개정안은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sup>4)</sup>으로 보이는데, 대표발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온라인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현재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하나은행에서 ‘은행직원이 찍힌 온라인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발급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이를 예금통장 사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이라는 표현보다는 ‘온라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임.

---

4)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이 통장의 표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래내역이 기재된 내역서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둘째, 인정범위 제한의 필요성임. 인정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서 핵심은 진위여부의 확인이라 할 것임. 현재도 진위여부가 확인(은행직인)된 인터넷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는 온라인 입·출금 거래내역서만 첨부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 형식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임의로 추가·삭제하는 등 위·변조<sup>5)</sup>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은행직인이 찍힌 온라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5) 「정치자금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온라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비교》

# 진위여부가 확인된 거래내역서

#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래내역서

발급번호 :

거래내역서

조회기간 : 2023-12-01 ~ 2024-01-31

|           |  |     |  |     |  |      |    |
|-----------|--|-----|--|-----|--|------|----|
| 계좌번호      |  | 고객명 |  | 신규일 |  | 만기일  |    |
| 주인(사입지번호) |  | 과목명 |  | 해지일 |  | 계좌상태 | 활동 |

| 거래일자       | 거래종류 | 입지내역 | 직요 | 통화 | 거래금액 | 거래후잔액 | 거래점 | 상대계좌 (주회원/비회원) |
|------------|------|------|----|----|------|-------|-----|----------------|
| 2023/12/01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3/12/08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3/12/15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3/12/19 | 입금   | 대체   |    |    |      |       |     |                |
| 2023/12/22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3/12/26 | 입금   | 대체   |    |    |      |       |     |                |
| 2023/12/29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4/01/05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4/01/12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4/01/15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4/01/19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 2024/01/22 | 입금   | 대체   |    |    |      |       |     |                |
| 2024/01/26 | 입금   | 타행이체 |    |    |      |       |     |                |

위와 같이 (입금)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2024년 03월 21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 거래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발급여부는 입출금 조회이력 확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1

입출금거래내역

NH Bank

입출금 거래내역은 입출금한 내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시간 : 2025년 02월 19일 17시 34분 38초

|       |            |       |  |            |  |
|-------|------------|-------|--|------------|--|
| 계좌번호  |            | 예금종류  |  | 잔액         |  |
| 예금주명  |            | 통장잔액  |  | 0원         |  |
| 조회시작일 | 2024/02/20 | 조회종료일 |  | 2025/02/19 |  |

(단위: 원)

| 순번 | 거래일시                | 출금금액       | 입금금액       | 거래후잔액      | 거래내용 | 거래기록사항 | 거래점     | 거래예외 |
|----|---------------------|------------|------------|------------|------|--------|---------|------|
| 1  | 2025/02/18 15:31:30 | 2,831,861원 |            | 0원         | 타기관요 | 농협     | 000036  |      |
| 2  | 2025/02/18 15:30:45 |            | 2,831,861원 | 2,831,861원 | 가상계좌 | 농협     | 001191  |      |
| 3  | 2025/02/05 13:48:19 | 50,000원    |            | 0원         | 타기관요 | 농협     | 000036  |      |
| 4  | 2025/02/05 11:06:12 |            | 50,000원    | 50,000원    | 선지입금 | 농협     | 000036  |      |
| 5  | 2025/02/03 10:22:39 | 188,700원   |            | 0원         | 타기관요 | 농협     | 000036  |      |
| 6  | 2025/02/03 05:06:19 |            | 188,700원   | 188,700원   | 금여   | 농협     | 000036  |      |
| 7  | 2025/01/31 08:15:49 |            | 43원        | 0원         | 프로스팅 | 토스뱅크   | 0921008 |      |
| 8  | 2025/01/31 07:09:35 | 43원        |            | -43원       | 대출이자 | 농협     | 000036  |      |
| 9  | 2025/01/31 04:59:20 | 20,000원    |            | 0원         | 자용이체 | 농협     | 000036  |      |
| 10 | 2025/01/29 11:33:24 | 1,644,097원 |            | 20,000원    | 타기관요 | 농협     | 000036  |      |
| 11 | 2025/01/24 21:55:58 | 4,000,000원 |            | 1,644,097원 | 타기관요 | 농협     | 000036  |      |
| 12 | 2025/01/24 21:54:09 |            | 305,957원   | 5,664,097원 | 가상계좌 | 농협     | 001191  |      |
| 13 | 2025/01/24 05:12:12 |            | 5,358,140원 | 5,358,140원 | 금여   | 농협     | 000036  |      |
| 14 | 2025/01/20 21:37:21 | 5,744,996원 |            | 0원         | 타기관요 | 농협     | 000036  |      |
| 15 | 2025/01/20 21:36:42 |            | 5,744,996원 | 5,744,996원 | 가상계좌 | 농협     | 001191  |      |
| 16 | 2025/01/20 07:53:31 | 5,000,000원 |            | 0원         | 가상계좌 | 농협     | 000036  |      |
| 17 | 2025/01/20 07:52:41 |            | 5,000,000원 | 5,000,000원 | 프로스팅 | 토스뱅크   | 0921008 |      |
| 18 | 2025/01/17 22:48:57 | 3,400,000원 |            | 0원         | 타기관요 | 농협     | 000036  |      |

\* 고객님의 요청하신 대로 위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 본 확인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농협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인터넷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한 농협·신한·우리·KB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은행직인이 찍힌 온라인 입·출금 거래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5개 주요 시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온라인 출력현황》

| 구분   | PDF | 엑셀 | PDF(은행직인 날인)          |
|------|-----|----|-----------------------|
| 하나   | ○   | ○  | ○ ※ 22.2.11. 서비스 시작   |
| 농협   | ○   | ○  | X 지점장 등 날인 필요시 영업점 방문 |
| 신한   | ○   | ○  | X "                   |
| 우리   | X   | ○  | X "                   |
| KB국민 | X   | ○  | X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행 제49조제2항제7호6)에 규정되어 있는 예금통장 사본에도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디지털·비대면 시대를 맞아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자금을 인터넷 은행에서 관리할 경우 제35조제2항(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7), 제44조제1항(회계장부의 인계·보존)8) 및 제46조제6호(각종 제한규정위반죄)9) 에서 규정하는 실물 ‘예금통장’의 개념에 인터넷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사본)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6)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②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②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 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재산,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신용카드 및 후원회인(後援會印)·그 대표자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8)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①회계책임자는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회계장부등”이라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를 인계하여야 하며,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지급품의서를 인계·보존하지 아니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공감하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다운로드(엑셀파일)가 가능한 입출금 거래내역은 그 내용을 임의로 추가·삭제하는 등 수정이 용이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6 |